

송두율교수 사건 기자회견 자료모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 송두율 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 1.1. [성명서] (송두율교수 대책위)
- 1.2. [유럽대책위 성명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7년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 1.3. [학술단체협의회 성명]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학문의 자유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4. 송두율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한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5. [대책위 긴급성명] 송두율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1.6. [송두율 교수 실형 선고에 대한 14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1.7.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성명서] 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
- 1.8. [송두율교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논평] 송두율 교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
- 1.9. [문화일보 시론] 송두율 교수, 그 길없는 길/ 김광원(논설위원)
- 1.10. [오마이뉴스 기고] “대한민국 학문에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까?”/ 박호성
- 1.11.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회와 닮은 꼴인가, ‘반성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는 저 오만을 보라/ 손석춘
- 1.12. 그의 주장과 저서 어디에 ‘맹목적 친북 세력 선동’이 있는가?/ 유승경
- 1.13. 이대경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장시기
- 1.14. 송두율 교수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세균(서울대 교수, 정치학)

- 1.15. [연합시론] '냉전의 섬'에 봄은 멀었나
- 1.16. [경향신문 사설] 송두율교수 관용 어려운가
- 1.17. [한겨레 사설] 실망스러운 '송두율 교수 판결'
- 1.18. [민주언론운동연합 성명] 송두율 교수에 대한 중형선고를 우려한다
- 1.19. [민중의소리 논평] 송두율 교수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 1.20. [참여연대 성명] 성숙한 열린사회에 합당한 새로운 포용과 관용의 잣대 절실
- 1.2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성명]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송두율교수에 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 1.23.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1.24. [송두율 교수 징역 선고 규탄 성명서] 국가보안법 없는 17대 국회 건설하여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 실현하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 1.25. [민주노동당 성명] 재판부는 언제쯤 국가보안법과 결별하나

2.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재외유학생 연구자 서명 -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질의 및 탄원서

3. 송두율 교수 2심 3차 공판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 (송두율 교수 대책위)

3.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3.2. [기자회견문] 2심 제3차 공판을 앞둔 우리의 견해

4.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기자회견

4.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

4.2. 위기의 교수 - 사회학자이자 독일국민인 송두율 교수가 한국 구치소에서 혹독한 환경에 고통받고 있다 (헨릭 보르크)

송두울 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송교수 1심판결 규탄과 국가보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2004년 4월 7일(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1. 송두울 대책위 대표 발언 - 각 종단 대표 발언
 2. 참가자들의 발언
 3. 송두울교수의 편지 낭독 - 부인 정정희 여사
 4. 헌법소원 제기 취지 설명 - 담당 변호사
 5. 성명서 (한국대책위/유럽대책위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서 제출

송두울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100 - 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전화 : 777-0641 ~3 팩스 : 775-6267 메일 : chrc@chol.com 홈페이지 : <http://freesong.jinbo.net>



〈 성 명 서 〉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부(부장판사: 이대경)가 송두율교수에게 7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의 사법부가 반민주적·반통일적 판결을 되풀이해 온 과거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고 민주주의와 남북화해 추구라는 시대정신을 존중하는 법정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 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사법적 폭거였다.

재판부는 최대의 쟁점이었던 후보위원 선임문제에 대해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황장엽의 전언과 이른바 ‘김경필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 송교수가 비록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긴 하지만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송두율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예단’ 없이는 불가능한 판결이었다. 그런 예단에 따라 재판부가 사법적 판결의 생명 줄인 증거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존립근거와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그런 판결은 유독 국보법관련 사건에서는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온’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자신을 냉전수구주의의 불모이자 공안당국과 수구세력의 제2중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법적 양심을 내뽐개친 판결이었다.

또한 우리는 재판부가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이 인간의 내적·정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 사상 등이 저술활동 등의 형태로 자신을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부적으로 표현될 자유가 없는 자유가 대관절 무슨 자유이겠는가? 때문에 재판부의 그런 판시는 그 자체로서 이미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주장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의 학문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그런 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차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내재적 접근법’에 의거한 송두율교수의 북한관련 저술이 심한 북한편향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의 문제는 어떠한 법적 제약을 받음이 없이 자유토론을 행할 수 있는 학문의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학문의 법정이 맡아야 할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학문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한마디로 ‘내재적 이해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으로 특징지어지는 연구방법론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물론 다른 모든 연구방법론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력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하나라는 점은 학문세계에서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 그런데 내재적 접근법에서는 ‘내재적 이해’가 ‘내재적 비판’의 전제조건을 이룬다. 때문에 기독교인이 이슬람인을 내재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이슬람인을 찬양하거나 이슬람교를 옹호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교수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체제를 옹호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슬람인의 입을 빌려 이슬람인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얼마만큼 뿌리 깊은가를 학문적으로 잘 구명하고 있다면 그 연구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학문적 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송교수가 북한사

람들의 입을 빌려 주체사상 등을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왜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등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연구가 지닌 학문성은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달리 재판부는 송교수의 북한사회에 대한 이러한 내재적 이해를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문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학문적 업적을 학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안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송교수는 군부독재의 유산으로 북한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비판이 판을 친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기에는 '내재적 이해'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학문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송교수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탁월한 관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음이 누구의 눈에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송교수는 예컨대 주체사상이 주변부국가의 자기공정을 위한 철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절대화됨으로써 자폐증에 걸리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북한정치질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의 실패 등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재적 비판의 관점을 한층 더 예리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그는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1995)에서 북한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자주성(주체)의 추구가 낳은 근(현)대성의 부재'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북한체제가 지닌 강점과 약점, 북한사회 발전이 지닌 긍정성과 한계 및 북한사회의 그간의 성취와 불행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가장 예리한 학문적 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재판부는 '학자가 순수한 학문 활동으로서 북한 연구의 하나의 접근법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북한과의 의사 연락 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는 송교수가 자신을 '경제인'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북한당국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송교수가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내재적 이해의 방법에 따라 행한 학문적 저술에 대한 반학문적인 비방이자, 주체사상의 긍정성, 북한체제의 강점 등을 이론적으로 구명한 것을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모략하는 공안적 시각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과 북한관련 저술들이 남한 내의 자생적 '주체사상파'들에게 이론적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사상파'가 운동권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교수의 내재적 이해에 입각한 내재적 비판의 방법론은 결코 '주체사상파'의 이론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다. 또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생적 주체사상파의 활동이 무지와 맹목적인 비난의 장막에 가려있던 북한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고 싶어 한 대중들의 욕구와 접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주체사상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지만 그 운동의 효과로서 대중들이 북한실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사회를 처음으로 비판적 안목을 지니고 인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점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송교수의 저술이 설령 주체사상파를 고무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그 측면은 그의 저술이 남한사회에서 처음으로 냉전적-공

안적 시각에서 벗어난 '북한학다운 북한학' 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데에 디딤돌이 된 사실에 비한다면 부차적인 의미를 지닐 따름이다.

재판부는 학자적 능력이 결여한 데다가 극단적인 수구적 견해의 소지자인 김광동과, 과거 주체사상파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국정원에 발목이 잡혀있는 홍진표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자들의 증언을 수용하고 박순성 교수와 같은 공인된 학자의 증언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또한 재판부가 송교수의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관련 활동은 남북화해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의 북한관련 저술활동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재판부는 송교수의 북한관련 저술활동을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 이라고 갈변하는데, 이런 강변은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해 설령 송교수가 북한의 명예직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저술 활동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 자신이 강조한 '지도적 임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 해석' 을 넘어서는 송교수의 저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괄컨대, 송두울교수의 저술활동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법률에 의한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법적 제한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학문적 저술을 학문외적인 수구적, 공안적 시각에 따라 재단하고, 그것도 자신들이 강조한 '합리적' 법적용의 선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수구적-메카시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우리는 송교수의 북한관련 저술이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옹호와는 거리가 먼, 북한사회에 대해 그와는 다른 학문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주는 귀중한 학문적 업적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송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자나 옹호자가 아닌 만큼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인식한 학자이며,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해 북한체제의 긍정성과 한계,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는 동시에 북한체제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스스로 교정하도록 노력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 당국처럼 송교수를 대했다고 한다면, 그를 벌써 북한 법정에 세웠을 것이고, 북한의 사법부는, '경계인을 포장한 김일성주의자' 라고 판결한 남한의 사법부와는 정반대로, 그가 북한체제의 긍정적 측면과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사회에 서구사상 등을 유입시켜 북한체제를 해체하려 한 '북한의 벗을 가장한 남한의 스파이' 로 처벌했을 것이다.) 그는 남한사회의 군부독재체제와 반공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남한사회가 민주화되는 만큼 남한사회에 따뜻한 애정을 보낸 열렬한 민주주의자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송두울교수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은 '애국적 민주주의자'이며 남한의 지식인이거나 북한의 지식인이 아니라, 남북한 체제의 현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꿈꾸는 한반도 민족주의자이자 미래의 철학자이다. 또한 그는 학문적으로는 서구의 비판적 사회과학의 전통에 '차이의 인정' 의 통해 '새로운 생성' 을 추구하는 '탈근대' 의 문제의식을 접합시키고, 그 문제의식에 입각해 훌륭한 저술들을 남기고 있는 매우 독특한 위상을 지닌 탁월한 학자이다.

그런데 그의 북한연구방법인 내재적 접근법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즉, 그의 내재적 접근법은 언젠가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야 할 하나의 민족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타자이면서도 타자가 아닌 타자' 에 대한 '내재적 이해에 입각한 내재적 비판' 의 방법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의 연구방법론은 남한이 북한사회를 옳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남한이 채택하기를 바라는 연구방법론이자, 북한이 남한을 옳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북한 역시 채택하기를

바라는 연구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 역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닌 긍정성과 한계, 강점과 약점을 함께 볼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대왔다. 이처럼 그는 남북한 모두에 대해 상대방 체제를 절대악으로, 자신의 체제를 절대선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마니교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내재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그 체제가 지닌 긍정적 가치도 함께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런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상호이해와 상호접근을 통해서만 새로운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남북한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철학, 즉 '이것이나 저것이나' 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것인 동시에 저것' 인 '~과 ~의 세계' 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제3의 것' 을 생성시키려는 송두율교수의 경계인적 사고야말로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및 새로운 민주공동체로서의 통일조국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철학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런 파악과는 달리, 그의 '경계인의 철학' 을 '기회주의적 회색분자의 궤변' 으로 폄하하거나, 아니면 송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처럼 '경계인으로 가장한 김일성주의자의 북한옹호론' 으로 낙인찍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간 그토록 탈피하려고 노력해 왔던 남북대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낡은 과거로 우리가 쟁취해야 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반역사적 행위로서 규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송교수는 당연히 무죄-석방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상호접근을 위해 애써온 그의 모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송교수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
- 북한을 국가적 실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가운데 인권 보장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가장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냉전적-수구적 판결의 법적 보장 역할을 떠맡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
- 냉전적-수구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안당국과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안당국과 사법부가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체적 개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그간 공안당국과 법원은 혐의사실 유포, 계구 사용,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불인정, 비공개재판 허용 등과 같은 형사법 절차상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왔다. 이런 잘못들을 공안당국과 사법부는 사과해야 하며, 그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법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노무현 정부와 새로 구성될 국회가 유보 없이 수용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화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2004. 7.4.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유럽대책위 성명서>

송두울 교수에 대한 7년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해외 민주인사 33인들과 함께 송두울 교수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해외 민주인사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송 교수는 결연한 의지로 이 초청을 받아들여, 장장 37년 만에 그간 성숙하고 발전했을 고국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다. 그러나 국정원, 공안검사, 수구부패정당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 보수언론 등 수구적 공안세력들은 송 교수에게 '친북인사', '해방 후 최대의 간첩'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연일 근거 없는 심자포화를 쏟아냈다. 이들 수구 공안세력들은 마치 군대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일찌감치 정치재판과 여론재판을 마무리하여 송 교수에게 추방이나 감옥이냐를 선택케 했다. 그 결과,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은 지루한 9차례의 공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 송 교수에게 감옥에서 생을 다하라는 징역 15년이라는 합작품을 선사했다.

우리 유럽대책위는 한줌도 안 되는 공안세력들이 송 교수를 겨냥해 중세식의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어도, 그러나 사법부만은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 엄정 중립과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수차례에 걸쳐 있었기에, 송 교수가 무죄석방되리던 우리의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3월 30일 송 교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4부(부장판사 이대경)는 송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중사' 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저술활동을 통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찬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통일을 방해했으며, 그 허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의 '카터라'식 진술과 미국으로 탈주한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의 '대북보고서' 디스켓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증거자료로 채택했으며, 송 교수에게 국제법상 금지된 반인권적 사상전향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역사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판결로서, 우리는 공안검사들로 재판부가 새롭게 재구성되었는지 착각할 지경이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판결로서 국내외 여론의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남북한 통일학술회의를 주선하여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남한도 민주화되어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내성과 포용력을 충분히 갖췄다면 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처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자진 귀국한 송 교수에게 저술활동과 언론 기고문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소신과 원칙 없이 대중 피고와 원고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어설픈 절충주의와 영성한 짜깁기식의 이중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충과 타협이 사법부의 중립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수구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재판부의 진지한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냉전이라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세력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라는 신세력에 깨어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송 교수의 무죄 판결을 염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열정과 확신에 찬 송 교수의 연구활동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썩은 동아줄로 묶어맨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그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송 교수의 학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서,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과 방송은 남한에 '메카시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연일 비난조로 보도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킨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발전된 미래와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정법을 빙자한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분명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나아가 재판부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 증거자료나 객관적 증언이 없이도 공안세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에게나 국가보안법의 울가미를 씌울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적으로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설사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무고한 민주인사들을 때려잡는 흉기에 지나지 않기에, 이제 우리는 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역사의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를 매개로 성립되는 실정법은 사회 각 계층의 통합이나 안정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극우 정치세력이나 수구적 사회세력들의 반쪽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실정법이라면 당연히 그 폐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무수한 민주통일인사들을 탄압한 악명 높은 '반민주반통일적' 법률로서, 이제 우리는 그 폐지를 당당히 공론화할 시점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재판부의 심각한 오판은 남북 간 평화통일을 위한 고귀한 디딤돌이었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마저도 심각히 훼손시키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매마른 고목에 남북의 대결과 분단이라는 어둠을 드리울 악의 싹을 틔우기 위한 행위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처럼 새로운 역사의식을 담기 위한 새로운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구적 공안세력들과 초록은 동색이라며 냉전적 메카시동맹을 결연하게 맺고 말았다. 사실 우리의 사법체계에 이들의 잘못된 판단을 제어할 배심원제도가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재판부의 판결은 전적으로 무효이며, 우리는 재판부의 대오각성과 공안세력과의 결별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유럽대책위는 그동안 2000명이 넘는 해외 각계인사들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발송해, 재판부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 것을 알렸고, 송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그 양심과 소신을 좇아 어느 누구의 눈치나 간섭도 배제한 채, 판결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구 공안세력의 야만적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결국 송 교수의 무죄판결과 조속한 석방을 염원하던 수천 해외인사들의 목소리는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송 교수에게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희망사항을 송 교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송 교수가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이를 제차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4부 재판장은 사법부의 엄정 중립을 기대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양심적 판결을 거부하고 수구적 공안세력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송 교수가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에, 먼저 재판부가 판결의 내막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사회 통합이나 안정보다는 분열과 불안을 촉진하고 있고, 특히 민족적 과제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제17대 국회는 입법적 결단을 통한 그 폐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공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의 시대역행적 과오들을 즉각 문책하고, 분단시대의 희생자인 송 교수를 즉각 석방조치하여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수구부패정당 한나라당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국가안보를 무기로 남북 화해시대에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또다시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행동을 한 이들 수구집단은 6.15 공동선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반성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7일

송두울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학문의 자유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30일에 열렸던 송두율 교수 사건 선고공판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후보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저술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남한 사회 내에 맹목적 친북주의를 크게 조장하여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였다는 점을 들어 7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인 후보위원 선임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물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다양한 정황논리에 근거하여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논리란 입장에 따라 슬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비춰 볼 때, 판결은 오직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대 사법원리의 핵심인 '증거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선고공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학문·사상의 자유를 생명 줄로 삼는 학술 연구자들의 단체인 우리 학술단체협의회는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사법적 잣대, 그것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사법적 잣대에 따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친북궤이적행위로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학문궤사상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 침해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지도적 임무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판단에 기초해 있다. 첫째, 송 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둘째, 북한 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후보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북한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그 결과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은 남한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북한에 대한 맹목적 옹호로 점철되어 있다. 넷째, 송 교수의 저술활동은 친북적 학생운동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맹목적 친북주의를 크게 조장하였고, 그 결과 남한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단은 객관적 증거자료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정황논리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정한 사법적 판단으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네 번째 판단은 오직 검찰 측 증인의 진술에 의거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 증언한 검찰 측 증인은 과거에 친북 성향의 학생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나중에 전향하여 현재 반북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송 교수의 저술을 읽은 연구자들이 많은 우리 학술단체협의회는 송 교수의 저술이 친북적 학생운동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과장과 왜곡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판단, 즉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이 친북 반남(反南)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 송 교수의 저술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려는 관점을 드러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비판적 북한 체제 옹호론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도 일부 인정했듯이 송 교수의 저술 내용 중에는 북한 체제의 핵심적 구성원리를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체제의 과도한 폐쇄성, 정치질서의 권위주의적 성격,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의 실패 등 북한체제의 핵심 문제를 건드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또한 북

한 체제가 그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재 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특히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논리의 관점에서 살펴 본 송 교수의 저술들은 북한 체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한 연구자의 연구물에 대해 완벽한 해석상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 학문의 발전은 연구대상의 특정 측면을 의식적으로 부각시킨 연구성과들 간의 논쟁과정에서 촉진되는 측면이 크다. 그런 점에서 어떤 연구대상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학계의 전체적 연구성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의 연구가 모두 균형 잡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종래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의 대부분은 반공참반북주의라는 선협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관계로, 북한 문제 관련 학계 전체 차원에서 해석학적 편향성이 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학계 전체 차원에서 해석학적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송 교수의 저술과 같이 사뭇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연구물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휜 것을 펴려면 다소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쪽으로 잡아당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남한에서는 북한 체제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해주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북한에서는 남한 체제의 성과와 장점을 소개해주는 연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비학문적 대립의식으로 가득한 남북한 학계 모두에게 이롭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학문콕사상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장점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송 교수의 저술 내용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기도 하다. 북한체제 및 그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남한 내에서는 전면적인 거부와 증오를 한 축으로 하고 무비판적 맹종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비학문적, 비이성적 대립구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송 교수는 서양철학 전공자답게 제3세계의 특수이념인 주체사상의 논리를 서양철학의 언어로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최소한 서양철학 및 주류 근대 사회과학과 주체사상 간에 소통가능성의 실마리를 열어주었다. 이는 학문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옹호라기보다는, 주체사상을 예정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비교 가능한 연구대상으로 만드는 첫 걸음을 열어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주로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서양 학문의 압도적 영향 하에 있는 남한 학문의 언어와 특수주의적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북한 학문의 언어라는 사뭇 이질적인 학문 언어들 사이에 서로 대화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영역을 발견하려 한 송 교수의 저술은 학문을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남북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약수를 가능하면 많이 발견해야 하는 평화통일의 도정에 유용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송 교수의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도 군사독재 시절 남한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비판한 국내 학자들의 저술 내용과 비교해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송 교수의 저술 내용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송 교수는 주로 철학적 훈련을 받은 학자인 관계로 북한 사회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적 연구를 행하지 못했다. 또한 독일에서 오랜 기간 망명생활을 한 관계로 남한 사회의 최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남한 사회의 장단점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그려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송 교수의 저술 내용의 장점과 단점은 학술의 자유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때에야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송 교수의 향후 연구도 더 균형 잡히고 충실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친북콕이적행위로 단정해버리면 송 교수와 다른 북한 문제 연구자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상호 발전해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는 물론 남한 학계의 발전과 나아가 남한 사회의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우리 학계는 맹목적 냉전반공주의의 틀에 갇혀 송 교수의 저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반대로 송 교수의 현재 처지를 동정하여 그의 저술을 과도하게 상찬(賞讚)하리만큼 부박하지 않다. 송 교수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학문의 자유광장에서 학문적 토론을 전개한다면, 그는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그의 연구의 약점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송 교수 자신과 우리 학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법리적으로도 크게 무리한 정황논리에 기초하여 송 교수의 저술활동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친북·이적행위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학문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퇴행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학문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4. 7
학술단체협의회

송두율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한 의견서

지난 3월 30일 마침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바대로 재판부는 남과 북을 포함하는 한국사회에 대해 민족적 애정과 비판의식을 잃지 않았던 사회과학자의 학술활동에 대해 7년이라는 중형으로 대응하였다.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로 평가되는 국가보안법에 기초해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비단 송교수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비판적인 학문활동의 자유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편견으로 인해 왜곡되고 방해받는 사정을 우려함에 따른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활동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없다. 학문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 하나로서 그 내용으로 연구의 자유와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연구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의 자유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유로서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자유는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무용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헌법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 법체계가 상징하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상은 자신의 사상 및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양심실현의 자유가 없는 양심의 자유가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학자의 연구결과 발표가 현 사회질서를 구체적으로 위협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연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학문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송교수가 이미 공개된 학술지나 시사잡지, 저서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유죄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확립된 원칙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렴되는 것을 체제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특히 학문적 성과는 학문의 세계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문명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수년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으로서 이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구체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삼 사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성격의 것들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송교수의 연구내용 자체에 대해 이것이 남한 체제를 의도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북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찬양한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인 것이며, 절대적 자유인 연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학문이나 예술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신적 기본권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다. 이와 같은 사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까지 법적 판단을 감행함으로써 국민의 사상과 정신적 영역에 개입하려하는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송교수와 같은 학

문영역에 종사하는 집단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적시하는 ‘북한에 이롭고 남한에 해로운’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적에게는 이롭고 우리에게 해로운’ 이분법적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 재판부는 이번 송교수 판결을 통하여 스스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질서 수호 및 국가안전에 위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유린하는 결과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아래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분장체제를 합리화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둘째, 학문활동의 영역을 제외한 부문에서 송교수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북의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의 친북적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지만, 위의 학문자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교수의 북한 왕래 또는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이 그의 학문활동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 또한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보아 넓게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송교수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의 인사들을 만난 것은 북한의 사회 그리고 사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사회학적 방법론인 ‘내재적 비판론’에 따르면 그 사회의 내부적인 시각이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를 위한 결사의 자유로서 학문자유와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현존하는 실정법에 반하고 처벌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일반적인 학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현 사회질서를 구체적으로 위협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송교수의 대북활동이 우리 사회에 대해 이렇게 높은 정도로 위협한 수준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북한 방문은 주 목적이 학문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도 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송교수는 남한의 공개적 잡지와 저서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이미 우리의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공유된 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공개되고 널리 알려진 학자의 연구결과 발표를 이유로 형벌, 그것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 우리 법질서의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강조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전한 표현의 자유, 나아가 사상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나가 버린 냉전시대의 유물임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이미 우리는 북을 적대와 정복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와 동맹의 민족적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고 또 이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여전히 북한을 남한 사회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에 동조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냉전적 대결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법원의 자세는 정부의 평화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 동안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후면으로 퇴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언제쯤 법원은 이러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반영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번 사건을 두고 송교수의 석방과 무죄판결을 기대하는 각종의 성명서가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부터, 또 해외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송교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그의 민족적 학문활동을 이유로 유죄의 중형판결을 내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 지나치다는 것을 외부에 확인시켜 주는 것일 따름이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장래의 공존을 모색하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포용의 뜻을 베풀 때도 되지 않았을까.

2004. 4. 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책위 긴급성명>

**송두울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송두울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고 -**

송두울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은 한국 법원의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고, 인권존중과 남북 상생 추구라는 시대정신을 무시한 반이성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법원이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반인권-반민주적 판결을 반복해 온 구시대의 불모가 되어 이국땅에서 한 평생을 남북 상호이해와 상호접근 등을 위해 애써온 한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한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발전이 여전히 '야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송두울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송두울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러한 투쟁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3.30

송두울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송두울 교수 실형 선고에 대한 14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송두울 교수 실형 선고에 부쳐 -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들은 37년만에 귀국한 송두울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사법 처리하는 것에 한결같이 반대해왔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의 양심들도 연일 재판부에 그의 무죄 석방을 촉구해왔다. 분단국의 한 지식인의 뒤늦은 귀향에 대한 가혹한 처사에 대해 세계는 분노를 머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고 결국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확신을 '예단'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송교수가 했다는 지도적 임무라는 것이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밖에 없다는 대목에서는 어떻게든 송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옴아매려는 재판부의 애처로움마저 느껴진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송교수가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은 황장엽의 '카더라' 식 진술과 1999년에 망명하였다는 독일 북한이억대표부의 김경필의 디스켓 문서밖에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심리과정에서 드러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합리적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재판부는 스스로 밝힌 실권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한 정치국 후보위원이 했다는 지도적 임무라는 것이 결국은 책을 써서 남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뒤집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남북의 학자들이 여섯 차례 진행한 학술회의는 남북교류에 기여하였고 그를 위한 '잠입·탈출'과 '회합·통신'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그의 저술활동은 남한내 친북세력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이 패러독스를 어떻게 제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학문의 영역에서 토론과 연구로 진단해야 할 그의 내재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오로지 '경계인'으로 위장한 친북선전 활동으로 예단하여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고 말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송교수가 '경계인'을 가장하여 북한 체제에 경도된 주장을 객관적인 것인 양 위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음으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현만 그렇지 사실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껄뻐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국 반성도 할 줄 모르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이 대목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잣대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조문과 판례를 신주단지 모시듯 예지중지하면서도 인권적 기준이나 헌법적 원칙에는 눈감는 사법부의 논리비약과 자가당착이 가여울 뿐이다. 언제나 사법부가 국가보안법과 결별하고 인권과 민주, 통일의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미룰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오는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야 말 것이다.

2004년 3월 31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성명서>

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

송두울 교수 재판부는 송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근대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송교수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송두울 교수의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과 과정을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평결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였다. 기나 긴 학문연구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학술활동을 어찌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국제적인 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송두울 교수에 대한 위와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한 평결의 오류는 수많은 국내외 지식인들의 조소와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더욱 재판부가 송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신빙성 없는 황장엽씨의 증언만을 인정한 것이며,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 또한 박순성 교수와 같은 북한전문 연구자의 학자적인 증언은 도외시하고 김광동씨와 홍진표씨와 같은 수구적 성향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나 국정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의 증언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불철주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지식인들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크나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송두울 교수 재판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고 국내외 지식인들과 통일과 새로운 미래의 한반도를 꿈꾸는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

'6. 15 남북 공동선언' 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의 남북합작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을 일제식민지 시대로 복원하거나 1950년의 한국전쟁, 혹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독재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송두울 교수 재판부가 이러한 악법 중의 악법을 토대로 송교수에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으로 군림했던 중세의 암흑시대처럼 과거를 지배하던 법 앞에 모든 지식인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송두울 교수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21세기의 세계와 한반도는 마녀재판이 횡행하던 서양의 중세시대도 아니고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통하여 지식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던 독재시대도 아니다. 학문과 지식인의 억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학문의 연구와 뛰어난 지식인의 지적인 모험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자격이 없다.

모든 자연만물과 마찬가지로 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법을 만드는 토대가 문학, 철학, 역사학, 그리고 사회학 등등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문이다. 일제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근대사는 불행하게도 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일과 미래

를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부재와 억압으로 점철되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송두율 교수는 그러한 근대사의 불행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상생과 통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를 하루라도 빨리 학문과 토론의 장으로 보내는 것이 미래와 통일을 위하여 복무하는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합치하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선 통일과정을 주도해야 할 남한 사회가 먼저 인권을 존중하고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보 없이 보장하는 참다운 민주사회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하며, 법을 적용하고 행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통일과 미래를 위해 법률의 적용과 행사에서 유연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통일과 미래의 학문을 고민하는 우리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준,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긴 판결이었다. 이에 통일과 새로운 미래의 한반도를 고민하는 우리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 새로운 미래의 한반도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시대적 법의 적용에 대응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3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송두율교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논평>

송두율 교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

4월 3일이 몇 일 남지 않았다. 전국이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56주년 4·3 추모행사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4·3이 무엇이었나? 국가 권력이 일방적 이념 잣대로 제주도민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죽음의 구렁텅이로 처넣었던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 사건으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좌익으로 몰려 3만여 명이 대학살 당하였다.

그 후 이 땅은 지긋지긋한 '레드 콤플렉스'가 판을 치고, 제주도민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했다. 진실과 정의는 실종됐다. 몇 년 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작년 노무현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제주는 비로소 인권과 평화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 즈음 민족적 양심과 학문적 양심을 갖고 독일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제주출신 송두율 교수가 스스로 입국했다. 우리는 4·3의 진실규명과 화해의 단초가 조성됨은 물론,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면회 등 급격한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코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세계적 학자를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니 그대서는 결코 안된다는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를 따뜻한 환대는커녕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공안검찰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송교수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판결과 유사하며 여론재판에 맞춘 과도한 형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재판부 스스로가 검찰의 2중대임을 자임하는 격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는 송교수가 독일에서 벌인 저술활동이 국내 독자들을 왜곡시키고 북한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했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음은 물론 또한 황장엽 등의 일방적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송교수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3 56주기를 며칠 앞두고 우리는, 남북화해의 시대를 거스르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여 반이성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며, 2심 재판부만큼은 현명한 판단으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004년 3월 30일

송두율교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

대표: 임문철 · 조성윤 · 이정훈

송두울교수, 그 길없는 길

[김광원 / 논설위원]

방법원 가동 417호실. 제독 사회학자인 송두울(60)교수는 법정으로 들어서며 부인과 법정을 향해 손을 들어보였다. 하지만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가 그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검은 테안경은 짙은 그늘을 한층 깊게했다. 3월말의 봄기운은 아직 먼 곳에 있었다.

30일 오전 10시를 넘기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송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200여명의 방청객들로 가득했으나 열기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교수의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보수단체 그리고 주한독일대사관 인사들도 보였다. 몇번째 공판이던가. 홀로 돌아왔은 송교수의 등은 시려 보였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37년만에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에 자진출두, 조사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에 대한 논란은 가열됐다.

귀국 10일만에 나온 그의 얘기가 컷전을 맴돈다. “양심적인 학자에서 거물간첩으로 추락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과 북을 함께 안고, 남북의 화해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보려 했던 노력이 오늘 의 상황 속에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회를 밝히며 ‘그간의 활동에 대한 지성적 성찰’ 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송교수의 혐의는 어마어마하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탈출, 회합 통신, 금품수수등이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지난 9일 결심공판은 같은 417호 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뜨거웠다. 송교수의 최후진술은 특히 관심을 끌었다. 책상을 짚고 선 그의 불안한 등너머 목소리는 또렷했다. A4용지 7장분량의 ‘축약’ 된 외침이었다.

“통일에는 상생의 원칙이 중요하다. 남북은 자기 속의 타자(他者)를 서로 인식해야 한다. 같으면서 다른 남북은 서로 배제하는 동시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고국땅을 밟으며 원숭이에 빚낸 지식의 허구성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바나나에 전류를 통하면 감전됐던 원숭이들은 전류를 끊은 다음에도 다른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한다. 다르게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다.” 그 최후진술의 일부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어 21일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장은 착석하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불만은 있겠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판결은 50분동안 계속됐다.

재판부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다. 판결의 목소리는 작고 나른하기조차 했다. 메모하기에도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엄혹했다. 재판부는 송교수가 스스로 부인한 북한 로동당 정치국 후

보위원이었음을 인정했다. 황장엽씨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됐다. 송교수의 북한에 대한 '내제적 접근법' 과 '경계인' 의 철학도 유죄였다. 남북 통일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송교수가 조선로동당을 탈당했지만 반성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판결후 법정은 응성거렸다.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변호인단은 증거부족이고, 모순된 판결이자, 위헌적 시대착오라고 강조했다. 검찰측은 선고형량이 적다고 불만이다. 송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악몽의 연속" 이라고 말했다. 송교수는 천식악화와 전에 없던 고혈압으로 고생한다고 했다. 정씨는 전화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찢다며 "모든게 파괴되고 있다" 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6개월동안 송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아픔 속에 돌아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까지의 논란에서 보듯 송교수의 비극적 상황은 단지 그만의 것일 수 없다. 그에 대한 판결내용과 함께 한 일간지가 소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적이다. 이번 총선후보들의 90% 이상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송교수의 '길없는 길' 에 모두 마음을 열어야 하는 증거다.

"대한민국 학문에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까?"

박호성

이대경 판사께서는 송두울 교수에게 4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국을 찾지 못하며 해외에서 보낸 37년에 7년을 덧붙인 것이니, 결국 44년 징역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이런 선고를 내린 이 판사님은 순식간에 우리 모두를 21세기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였던 20세기에 살고 있다는, 무서운 착란증에 휩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사께서는 대단히 탁월하게 사법부의 존엄성까지도 단숨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 판사께서는 여론재판에 발맞춰 과도한 형량을 주저없이 내딛었습니다.

뿐만 아니라公安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법원을 당당히 검찰의 2중대로 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의 판결문을 들으며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울러 송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단세포적인 논리까지 흔쾌히 구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비판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예수쟁이라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개는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도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다'라는 절묘한 논법으로, 이 판사께서는 송 교수를 북에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한국에는 싸늘한 눈빛을 보내는, '경계인'으로 위장한 기회주의자라고 처단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 판사께서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지휘 아래 검찰이 연주하고 재판부가 춤추도록 이끈,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한 것입니다.

검찰의 2중대로 전락한 법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송 교수가 과연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가, 그가 쓴 글과, 남북학술회의를 중재한 것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것인가 하는 세 개의 초점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께서는 이 세 가지 주요쟁점 중, 유독 '저술 활동'만을 문제삼았고, 이를 유죄의 근거로 몰아부쳤습니다. 그러나 송 교수가 다른 내재적 접근법은 결코 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문화 인류학 등에서 서로 다른 두 체제를 비교연구할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해오던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하필 송 교수에게만 '천복적'이라는 올가미를 뒤집어씌운 채 이적활동이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를 처벌한 "지도적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만큼, 그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양식 있는 대다수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이 판사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께서는 6·15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면회, 개성공단 신축 등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세계적 학자에게 중형을 내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이 판사께서는 "학문에는 국가보안법밖에 없다"고 자랑스레 선포한 것입니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귀국했다

이러한 분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최근 송 교수가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한 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흐르는 물은 그 앞에 멈춰 서지 않고 그 웅덩이를 메우고 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에 고인 물에서는 수초가 돋고 물고기가 번식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송 교수의 귀국은 바로 그 웅덩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만나 잠시 물의 흐름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결코 흐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귀국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와 민주와 통일은 존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 판사께서도 이 기회에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회와 닮은꼴인가, '반성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는 저 오만을 보라

손석준

반성이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 교수를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북한 편향적인 저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고 밝혔다.

사뭇 '관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말투이다. 하지만 곧이어 '본심'이 드러난다. 송 교수가 "입국 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애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훈계'한다.

어떤가. 저 대낮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무리들이 인죽번죽 늘어놓은 말에 버금가지 않은가. 사과를 하지 않아 대통령을 탄핵한 입법부와, 반성을 하지 않아 철학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 사이에 오만의 무게는 누가 더한가. 결국 '중형'도 송 교수의 '자업자득'이란 말인가.

그랬다. 2004년 3월12일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썩은 물결이 남김없이 드러난 날이라면, 3월30일은 사법부의 정체가 남김없이 폭로된 날이다. 다음날인 3월31일, <조선일보>는 물론이고, 그 신문과 차별성을 '선전'하며 '열린 신문'을 자처한 <중앙일보>의 '가면'도 벗겨졌다.

차분히 돌아보기 바란다. 공안검사·공안판사·공안기자들의 주장처럼 송 교수가 이 땅에 '공작'을 위해 귀국했는가. 독일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자유롭게 살고있던 송두율 교수를 누가 불러들였던가. '초청'의 선의를 믿고 조국 땅을 밟은 그에게 우리 너무 모질지 않은가. 이악스럽지 않은가. 송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공안당국과 수구신문들은 늘 그랬듯이 입을 맞추었다. 송 교수를 '해방이후 최대 거물간첩'으로 살친스레 몰아갔다.

보라. 송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사실상의 '준법 서약' 아닌가. 그럼에도 검찰은, 판사는, 송 교수가 '반성의 모습'이 없단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백을 하라며 다그치고, 자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두 신문의 사설이 '지식인의 자세'를 거론하는 것은 얼마나 희극인가.

그래서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인, 모든 '시민'에게 묻고 싶다. 송두율, 그가 누구인가. 세계적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가 아끼는 제자이자 독일 대학의 철학교수 아닌가. 아니, 상식으로 묻고 싶다. 사상가에게 사상 전향을 요구하는 검사에 침묵해도 좋은가. 사상가에게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판사를 모르쇠 해도 좋은가.

그 검사와 그 판사에 비판은커녕 '고무 격려'하고 나선 그 신문에 글을 쓰며 '진정한 진보'나 '열린

지성' 따위를 자부하는 율뚝뚝이들은 또 어떤가. 하버마스가 방한했을 때, 곰비임비 그를 '수행'하던 이 땅의 술한 '하버마스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한 강연에서 하버마스는 갈라진 남과 북 사이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남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력에 대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시민으로서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자극하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남한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민주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 나는 왜 남한의 정부나 국민이 아직도 자유국민으로서의 자의식을 발전시켜 현상타파의 길을 뚫어 가는 데 소극적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뿐이 아니다.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파시스트들인 수구세력에게도 하버마스는 적실한 충고를 남겼다.

"설사 북한 정권이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전략은 가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이로써 열리는 자기성찰의 힘이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큰 힘이 된다."

저 서슬 푸른 검찰과 '권위' 세운 판사 그리고 '공안 언론인'에게 하버마스의 충언을 들을 귀 있을까. 마치 하버마스 사상을 자신만이 독점한 듯 언제나 들먹이던 '떡물'들조차 없는 귀를 저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기어이 역사가 저들에게 '중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여, 이 땅에서는 온전한 민주주의자로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전투적'이어야 하는가.

그의 주장과 저서 어디에 '맹목적 친북 세력 선동'이 있는가?

유승경

냉전 교육의 잔재는 너무나 깊다. 한국의 실정법이나 이념에 대한 정치적 지형에 비취 불 때 송두울 교수가 무죄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그렇지만 30일 재판부 판결문의 일부를 언론에서 대하며, 읽어내리기 힘든 고통을 느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의 이념에 편향된 학술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국내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맹목적 친북세력 육성에 기여했다"며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그 내용이 외부로 표현될 때는 안보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내 놓았다.

송두울 교수는 과연 '국내 주체사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맹목적 친북세력 육성에 기여했는가?'

이 부분은 송 교수의 저서에 대한 몰이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송 교수는 주체사상은 사투리라고 하며, 투박하고 조야하지만 그 속에는 사투리가 갖는 생명력 같은 것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필자는 이 표현이 송 교수가 주체사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역사 속에서 이미 사투리로 규정된 말이 표준어가 될 수는 없다. 그렇듯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공식적 국가이념으로서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주체사상 속에는 식민지 통치의 고통과 그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그는 본다.

송두울 교수는 언젠가 그의 칼럼과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1995, 한겨레출판사)에서 북한이 직면한 문제를 '자주성(주체)의 추구가 낳은 근(현)대성의 부재에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자주를 실현하려는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노력이 그 대가로 근대성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주변 강국에 유린되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자주'를 택했고, 북한은 '자주와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의 과잉으로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의 길을 걸어 왔다. 그로 인해 북한은 '근대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으로부터 멀어진, 외부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상당기간 외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고립된 소왕국'으로 추락했었다.

송두울 교수가 '경계인'을 자임한 것은 선의로 출발한 북한이 고립된 전근대사회로 추락하고 있는 사실과 남한 사회의 우리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 믿는다.

그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쓰라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게 '세계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며, 북한을 기형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성원들에게 현실적 결과로써의 북한에 집착하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현실과 불행을 우리 역사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으로 이야기하며 내재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의 저술은 '한반도의 우리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우리들'이 '민족이라는 공통된 지반'에 서서 화해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함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필자 역시 북한은 '근대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회라 여긴다. 아직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범 죄자,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은 찾아보기 힘들며, 당관료의 특권주의는 봉건적 유제와 결합되어 인민을 지배한다.

인간의 정신질환이 인간의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의 자연스러운 작동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정신분열병과 편집증(파라노이드)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의학계는 이 두 질환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사회적 요인보다는 대뇌기질의 이상에서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설명의 틀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정신분열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현실과 자기를 분열(분리)시켜버리는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능의 자연스런 현상'이며, 편집증(파라노이드) 역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방어적 심리의 결과'라는 설에 호감을 느낀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는 북한을 식민주의를 경험한 제3세계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주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세상과 단절', 즉 '근대성의 외면'이라는 길을 선택해버린 데 따른 것이라는 송 교수의 설명에 공감한다. 그래서 북한에 동정이 간다.

송두울 교수가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북한에 편향된(?) 학문적, 실천적 활동을 한 것은 '북한의 현재 모습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분단구조가 낳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로서의 남북한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송두울 교수는 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에서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세계화를 지향하는 남한과, 세계사적 발전에서 벗어나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의 공존"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한반도가 직면한 과제를 "통일, 즉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근(현)대적 과제와 세계화라는 탈근(현)대적(post-modern)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소모적 갈등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한반도가 구한말의 위기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어느 곳에 주체사상의 이론적 토대와 맹목적 친북 세력을 키우는 선동이 들어 있는가?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 북한 업무를 하던 직장의 마지막 출장에서 "내년이면 북남이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인데 어디를 갑니까"하던 1년 정도 사귄 북한의 정치지도원이 생각한다.

우리측으로부터 '김 동무, 이렇게 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어? 매일 공장에 가보긴 해? 차가 없으면 뛰어서라도 가야지'라는 호통을 듣고 "열심히 합니다. 매일 공장에 가봅시다,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던, 필자보다 젊은 북한의 공장 지도원이 생각한다.

그는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한 번 집어오고는 더 가지 않았다. 아마 음식 앞에 추태를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라도 들었나 보다.

필자는 북한 일꾼의 모습에서 송 교수가 말하는 긴장을 발견한다. 그리고, 재판부 판결문에서 '분단 구조에 짓눌리고 유신과 5공화국에 의해 죽어버린 언어'를 발견하며 분단 구조의 난맥상을 느낀다.

송 교수의 표현대로 '통일은 긴 여정'이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통일이라면 그 긴 여정 속에서 미래를 보며' 북한의 긴장과 분단구조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두울 교수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대경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장시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영희 교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했다
이영희 교수를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의 사법부에도 존재한다고 재잘대면서...

검찰이 내세울 수 있는 증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고 검사를 힐난할 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법을 믿지 말고 법복을 입은 냉철한 인간을 믿자고
너도 칠팔십 년대의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웃지마세요” 라고 청중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근엄하려고 노력했다
법정의 권위와 법관의 위엄과 국가의 안녕은
권한을 지닌 정의로운 인간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고...

2004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417호실 대법정의 알량한 법복의 권위로
너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와 근엄함을 앗아갔다
송두울 교수가 경계인으로 위장했다고
책과 글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전파했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7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

백인이면서 흑인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슈바이처
미국인이면서 중국을 노래한 펄벅
인간이면서 생태계 파괴가 서글퍼 새만금에서
여의도까지 삼보 일배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으로 살았던 만해 한용운
아름다운 한반도를 꿈꾸며 38선을 넘었던 백범 김구
휴전선의 경계를 넘은 임수경 문익환 황석영

이들 모두가 경계인으로 위장한 간첩이니?

「역사는 끝났는가」를 읽어보았니?

「경계인의 사색」과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를 읽어보았니?

송두울 교수의 짧은 에세이 하나라도 진정심으로 읽어보았니?
어느 책, 어느 글에 김일성 부자의 사상이 있니?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는 황장엽이 아니니?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는 홍진표가 아니니?
그들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주인을 바꾼 권력의 노예들이 아니니?

누가 누구에게 반성을 해야 한단 말이니?
37년의 유배생활에서 돌아와
한반도의 운명처럼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송두울 교수가 반성해야 하니?
혼자서 저 넓은 세계로 항해도 하지 못하는
반 쪼가리 배에서 흥청망청하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니?
중세의 신학으로 마녀사냥을 하듯
국가보안법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너가
검찰과 함께 송두울 교수에게 무릎 꿇어야 하지 않니?
너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지 않니?

백기완 님의 말처럼 낫을 썩썩 갈고
도끼의 날을 세우고 죽창을 들어
감옥 문을 부수고, 눈물 흘리는
아내와 아들에게 송두울 교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송두울 교수는 말한다 “기다리라고...
나는 37년을 기다렸다고...
7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겠느냐고...
부인과 아들은 독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라고...
나는 감옥에서 더 기다리겠다고...”

송두울 교수는 기다릴 것이다
너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반성할 때까지...

송두울교수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세균(서울대 교수, 정치학)

지난 3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두울교수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사람 가운데 '최고위직 인사' 인 데에다가 '사과나 반성 등 재전의 정' 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오는 3월 3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 선고가 내려지면 한 때 우리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교수사건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일단 한차례 마무리를 보게 된다.

송두울교수 귀국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적어도 노무현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이 문제를 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북한 방문 등으로 반체제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사들 역시 이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및 보수적 지식인 등은 국정원이 송교수가 북한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가 서열 23위의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고 자백했다고 발표하자 그를 '해외에서 활동한 해방 후 최대의 거물간첩' 으로 내몰았다. 이런 사태가 전개되자 한 때 관용을 주장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였다. 게다가 이전에 국보법이 폐기되거나 적어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 중에서도 송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송교수가 자신의 행적을 숨기거나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보도되자 지식인들 중 많은 이들은 송교수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지식인 정도로 매도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간의 공판과정은 그러나 송교수에 대한 혐의내용이 근거 없음을, 때문에 설령 국보법을 적용할지라도 그가 무죄임을 입증해 주는 과정이었다. 검찰은 송교수가 북한의 '최고위직 간부' 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으며, 그가 어떤 '지도적 임무' 를 수행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오직 "예수를 비판하지 않으면 예수쟁이다" 와 같은 철저한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입각하여 그의 저술활동과 남북 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주도 등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들' 의 주장과 증언에 의지하고, 송교수가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시효만료라 그 사실을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전과옥조로 들먹이면서 말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남북화해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신시대나 5.6공 시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송두울교수사건은 송교수 개인의 고투와 많은 사람들의 헌신에 힘입어 남북간의 화해와 상호이해의 절실함과, 국보법 폐기의 절박함을 다시 환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로 인해 공판이 진행되면서 보수언론 역시 설설 뒤통무니를 빼기 시작했고, 위세 당당하던 검찰 역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형은 법 중의 법으로 굳어져온 국보법이 이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검찰의 외마디 비명 소리와 같은 것이었다.

송두율교수사건은 설령 국보법을 적용할지라도 인권존중과 남북간의 화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존중해 판결한다면 송교수는 무죄이지만,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송교수와 같은 이들이 언제든지 다시 범정에 설 수 있음을, 따라서 인권존중과 남북간의 화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존중한다면 국보법이 한시 바빠 폐기되어야 함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즉, 송두율교수사건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국보법이 아직 살아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지만, 살아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확실하게 사망시켜야 할 범임을 알리는 사건이 된 것이다. 국보법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송두율교수사건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교훈은 분명 이 점일 것이다. (2004.3.16)

'냉전의 섬'에 봄은 멀었나

1심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중형 선고 이유다. 과연 그가 통일을 방해했다. 구형공판 이전부터 관용을 기대한 우리로서는 1심 판결 내용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선고 형량이다. 선거법 위반여부 논란 와중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정치적 승부수로 강행한뒤 큰 역풍을 맞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처럼 균형감이 떨어지는 판결이라고 본다. 금강산행 관광객들의 버스행렬이 일상적으로 휴전선을 넘나들고 이산가족이 수시 상봉하는 화해시대가 아닌가.

재판부는 그간 송교수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고공판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한다.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송교수가 후보위원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진술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 주효한 듯하다. 아직도 반공 냉전 논리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면 후보위원 여부와 관계없이 송교수에 대한 중형 선고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결로 인식할 것이다. 검찰도 송교수가 저질렀을 구체적인 반국가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은가.

변협이나 민변 등 변호사 모임의 부정적인 반응대로 송교수가 해외학자로서 학술활동에 치중했고 발전된 조국에서 살겠다며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 학술회의차 북한에 잠입.탈출.회합.통신한 혐의 등에 대해 그가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점은 당연하다. 학술회의 주도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면서 명예적인 후보위원 문제로 중형을 선고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 그가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한 것과 대조된다. 송교수 사건 뿐 아니라 대북송금 특사 문제나 대통령 탄핵 문제 등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늘엔 봄바람이 불어도 마지막 냉전의 섬인 이 땅의 얼음은 아직 털 녹았다. 항소심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

<경향신문 사설>

송두율교수 관용 어려운가

법원이 어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중형 선고는 예견됐다. 그래도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법원이 송교수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매긴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가 비록 작년 귀국할 때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기는 등 그의 활동에 미심쩍거나 정직하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으나, 이것만으로 그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송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국내에 들어왔다. 국정원 등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명시적으로 전향서를 쓰라는 것을 거부했을 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사실상 전향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가 설혹 법원 판결에 나온대로 조선노동당 후보위원직에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가 그 직을 걸고 당 핵심간부로서 적극 활동한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

그는 물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토로했다. 그러나 이도 이미 30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이다. 이 사실을 진작 밝히지 않은 그에게 도덕적 질타를 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의 법적 잣대로 그를 재단하기에는 너무 철이 지났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온당했다고 본다.

한반도 주위에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짙게 깔려 있다. 최근에는 핵문제로 남북관계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경제교류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듯이, 결국 한반도에는 화해의 움직임이 다시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겨레 사설>

실망스러운 '송두율 교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에 걸었던 한가닥 기대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무죄'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늦게나마 '인권의 보루'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길 촉구한 인권운동단체들도 새삼 완고한 장벽을 실감해야 했다.

우리가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기대한 이유는 다름아닌 검찰의 논고에 있다.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근거로 검찰이 내세운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입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친북·이적 활동의 증거라는 '내재적 접근법'은 학계에서 공인된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증거없이 황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도 문제려니와 저술활동과 사상을 거론해 징역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드러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송 교수를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북한 편향적인 저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성숙된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송 교수의 태도는 반성하는 모습과 동떨어진 것"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재판부도 잘 알고 있듯이 송 교수는 이미 조선노동당을 탈당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도대체 한 지성인에게 그 이상의 반성을 요구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한 일인가. 재판부가 사실상 전향을 요구하는 공안당국의 시각과 다를 바 없는 잣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명>

송두울 교수에 대한 중형선고를 우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지난 3월 30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송두울 교수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 씨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고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저술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유포한 것,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황장엽 씨의 진술만으로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미 학계에서 공인된 '내재적 접근법'을 친북·이적활동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데 우리의 생각이다. 그는 '경계인'의 입장에서 남북 모두를 끌어안고 서로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해 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게다가 송 교수는 이미 조선노동당을 탈당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으며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수 차례 사과를 했다. 송 교수에게 더 이상 어떤 반성을 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무색해질 정도로 남북관계는 크게 변화했다.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90.6%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남북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으며, 민간교류·남북경협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효력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송 교수에게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시대착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일부언론의 메카시즘적 보도태도에 주목한다. 31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송 교수를 '대남공작원', '거짓말하는 교묘한 학자'로 규정했고 '좌파인사들이 송 교수 사건을 이념 정당화 도구로 활용했다'는 어거지 논리를 폈다. 그의 석방을 외치는 양심세력에 대해 "친북세력임을 드러내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기까지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그를 정치에 이용하려던 세력이 있었다면 그들도 겹겹히 반성"하라며 석방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겨냥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메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의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2심 재판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송 교수 사건' 정도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2심 재판부가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법적 정의를 실현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

2004년 3월 3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중의소리 논평>

송두을 교수 중형선고를 규탄한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을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황장엽씨와 김경필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송 교수의 학문활동을 문제삼았으며, 여기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들어 중형 선고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황장엽씨와 김경필씨 모두 송 교수를 수사한 국가정보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물인 데다가 증언의 토대가 되는 북한에서의 활동을 확인해 줄 제3자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끝없는 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또 송 교수가 남한만 비판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을 촉구한 점은 1심 재판부의 지성인으로서의 양식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자면 남북한 모두에 대해 언제나 양비론을 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학문 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며, 봉건 시대에서나 통할만한 무지몽매한 주장이다.

6.15시대를 맞이하여 남과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시계는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는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학자의 양심을 유린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성명>

- 성숙한 열린사회에 합당한 새로운 포용과 관용의 잣대 절실 -

1. 송두율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송교수의 남북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과 과정은 평화통일에 기여한바가 있다고 판단, 무죄로 판결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중·최영도)는 송교수가 행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의 주된 내용으로 저술활동을 문제삼은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에 대해, 자유와 진리의 추구를 위해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시기, 연구장소의 선택에 공권력이 결코 개입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의 자유'와 학회나 학술지, 저서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송교수의 저술활동을 문제삼은 사법부의 판결은 헌법배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비단 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일진대, 국가보안법이 허락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학문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이미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밝히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3. 특히, 학자의 저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7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경악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대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그 적용 근거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법부가 송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일 뿐이다. 이제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임의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수많은 부당한 피해자를 양산해왔던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송교수의 자발적 귀국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송교수에 대한 구금과 사법처리 과정은 상식적인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메카시즘 외의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언론과 지식사회의 냉전적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 점에서 사법부의 중형선고는 한국사회의 낡은 냉전수구논리를 정당화하는 반면,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과 열린 사회로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귀화를 결심한 독일국적 지식인에 대한 중형선고라는 점에서도 한국사회의 불관용과 편협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대내외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관용과 포용의 잣대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내면의 편협한 흑백논리의 벽도 사라져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